

# 청년안심주택 **민간임대** 입주(예정)자 안내문

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 간 “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”을 체결하여 공급되며, **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**입니다.

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하며, **‘민간임대주택’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되는 주택**입니다.

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, **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들의 임대보증금 관련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차인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**

## ● 청년안심주택 **민간임대** 입주(예정)자 임대차 계약 진행 시 **확인 필수사항**

| 필수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령 및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</b>          | [관련 법령, 협약 내용] <b>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</b> 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”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<b>사용검사, 임시사용승인</b> 또는 건축법에 따른 <b>사용승인,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일(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)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</b><br>※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</b>            | <b>대항력(점유, 전입신고)</b> 과 <b>우선변제권(확정일자)</b> 를 갖춰야, <b>임차인 보호(선순위자)</b> 가 될 수 있습니다.<br>※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는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최우선변제권 해당여부</b>              | [관련 법령] 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제8조”에 따라 <b>소액임차인(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)</b> 은 <b>최우선변제권(대항력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권리)</b> 을 가짐<br>※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(*서울시): 1억6,500만원 이하(‘23.02.21~), 1억5,000만원 이하(‘21.05.11.~’23.02.21.)<br>최우선변제 금액(*서울시): 5,500만원 이하(‘26년 현재 기준), 따라서 5,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잔액 환수 가능<br>※ 대항력 요건 : 전입신고(*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) |
| <b>권리관계 등 상황</b><br>(*계약일, 잔금일)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<b>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하며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열람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</b><br>※ 계약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 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원상복구 계약 전</b>                |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<b>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을 꼭 찍어두시기</b>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● 청년안심주택 **민간임대** 입주(예정)자 임차인 입주 중 **확인 필수사항**

| 필수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령 및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임대차계약 진행 시 누락사항 유무 확인</b> | 거주 중이더라도 위 ‘계약 진행 시 필수 확인사항’ <b>재점검 해보기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★보증보험 미갱신 확인★</b>         | <b>거주 중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</b> , 보증회사에서 통보하는 우편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)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(SGI) 임차인이 즉시 가입 |

※ **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**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, 계약(갱신),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**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**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 
(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: 02-793-0765~0768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: 02-2133-1200)

# 건대입구역 청년안심주택 더포디엄 830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

(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12)

공공지원 민간임대

2026. 08. 13.

주식회사 엘앤케이이스테이트

## [주택개요]

- 주택위치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12 (2, 7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)
- 공급호수 : 총480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313세대 중 금회 추가모집 3세대  
(일반공급 2세대, 특별공급 1세대)
- 단 지 명 : 더포디엄 830
- 협약서 사업자명 : (주)엘앤케이이스테이트
- 시 공 사 : 코오롱글로벌(주), 코오롱이앤씨(주)

※ 1인 1주택형(타입)에 대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이 모두 탈락 처리됩니다.

※ 기존 계약자는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,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등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
■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.

■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■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 
(단, 기준 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에 한함)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8.06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(예비자 연락이 늦어질 경우 판단기준일 : 사업자 연락일일 수 있음)이며,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
■ 본 단지는 사용승인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. (전세대 전액보증)

(신규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금액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 가입이 됩니다.)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으며,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. (입주예정자께서는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※ 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,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, 입주 예정자께서는 계약전 반드시 대출 실행은행에 문의 바랍니다. (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)

■ 입주예정자 개인의 사유나 설정된 근저당금액으로 일반(개인)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, 계약 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단지(임대사업자)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증빙의 책임은 입주예정자에게 있으며, 개인사유 대출 불가 등 단지(임대사업자) 문제 외 사유로 인한 계약파기 시에는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) 본 위약금은 입주 전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이며, 계약 개시 후 발생하는 '중도 퇴거 위약금'과는 무관합니다.

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여 보증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보증금 보증기간 만료 전 "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기관 HUG (1566-9009)"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.
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,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,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)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간 : 2026.06.25. ~ 2027.06.24. (\*종료일 : 2027.06.24.) (전세대 전액보증)

※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13세대 전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전액 가입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유효기간 이전에 갱신 예정이며, 보증보험 미갱신시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에게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.

-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-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- 본 추가공고와 최초공고(2024.12.20.)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본 추가공고의 내용이 우선시 되며 본 추가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고를 따릅니다.
-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건대입구역 더포디엄830 입주지원센터(02-6239-0330)를 통해 상담을 실시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- 금번 모집공고 호실은 호실별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전부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각 호실별 보증보험 가입 현황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구분   |                | 근저당권 현황      | 임대보증금 보증금액                | 현재 보증보험 만료일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공급 | (15층)<br>1503호 | 218,230,000원 | 93,000,000원<br>(보증금의 전액)  | 2027.06.24.<br>(유효기간 이전에 갱신 예정) |
| 특별공급 | (18층)<br>1810호 | 392,520,000원 | 141,000,000원<br>(보증금의 전액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반공급 | (22층)<br>2206호 | 400,240,000원 | 173,000,000원<br>(보증금의 전액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[공급일정 및 청약]

### ■ 추가 모집 일정

|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주자<br>모집공고  | ▷ | 청약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▷ | 서류심사<br>대상자 발표           | ▷ | 당첨자 서류 사본<br>제출 (이메일)<br>당첨자/예비당첨자 | ▷ | 입주자 사전점검 후<br>계약체결 및<br>원본서류제출               |
| 26.08.13.(목) |   | 26.08.17.(월)<br>~ 26.08.18.(화)<br>00:00~23:00 |   | 26.08.19.(수)<br>17:00 예정 |   | 2026.08.20.(목)<br>~ 08.21.(금)      |   | 2026.08.25.(화)<br>~ 08.28.(금)<br>10:00~17:00 |

### ■ 입주지정기간 :

- 1503호 2026.10.15.(목) (오전 9시30분) ~ 2026.10.22.(목) (오후 4시)
- 1810호 2026.11.06.(금) (오전 9시30분) ~ 2026.11.13.(금) (오후 4시)
- 2206호 2026.10.06.(화) (오전 9시30분) ~ 2026.10.13.(화) (오후 4시)

### ■ 청약문의

- 대표번호 : 02-6239-0330, 월요일~금요일 10:00~17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)
- 홈페이지 : <https://thepodium830.com>
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(02-6239-0330)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청약과 관련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청약신청 : 네이버 폼: <https://naver.me/xm0nqrmD>

### ※ 네이버 청약 아이디 소유자와 청약 신청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

-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**이메일(스캔본)**로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5,000%를 예비자로 선정하며,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.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,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

※ 전세대 전액 보증보험 가입 완료로, 동일유형 타입내 예비자 호실 공유 가능

■ 본 주택에 청약 시 일반공급 중 주택형(타입) 별로 1건만 가능하며,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 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
■ 입주자 세대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진행됩니다.

■ 유의사항 : 아래 내용 외 유의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

- 잔금납부일(입주일)이 주말(토요일, 일요일)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,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※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 참조 : <https://soco.seoul.go.kr/youth/main/main.do> (주택찾기 > 모집공고 > 민간 최초 > 단지명)

## [공급현황]

[특별공급]

(단위 : 원)

| 공급<br>유형                       | 주거<br>전용<br>(타입)             | 공급<br>호수 | 보증금         | 임대료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청년 또는<br>신혼부부형<br>(예비신혼포<br>함) | 42.17m <sup>2</sup><br>(52A) | 1810     | 141,000,000 | 983,179 |
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

[일반공급]

(단위 : 원)

| 공급<br>유형                       | 주거<br>전용<br>(타입)             | 공급<br>호수 | 보증금         | 임대료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청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.40m <sup>2</sup><br>(25B) | 1503     | 93,000,000  | 641,739   |
| 청년 또는<br>신혼부부형<br>(예비신혼포<br>함) | 42.17m <sup>2</sup><br>(52A) | 2206     | 173,000,000 | 1,196,890 |
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

- 보증금 비율 30%, 35% 40%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나, (최초 계약이 아닐 경우) 기존 호실의 금액으로 계약될 수도 있습니다.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.

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,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

## [신청자격 및 제출서류]

■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8.13.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(예비자 연락이 늦어질 경우 판단기준일은 사업자 연락일일 수 있음)이며,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. (네이버폼을 이용하므로 네이버 청약 아이디 소유자와 청약 신청자 동일해야 함)

※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
-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 주택은 청약자(당첨자)와 및 계약자, 입주자(전입자)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  
\*신혼부부의 경우, 청약자(당첨자) 명의로 계약 체결(공동명의 계약 불가)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 
(단, 세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)  
- 자동차가액 기준 : “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” 준용
- 그 외 신청자격 :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. 단, 소득 및 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
  - 소득기준 - 청약 시 아래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순위 선택 필요  
(청약 시 선택한 소득 수준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)

-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[단위 : 원]

| 순 위 |      | 1인 가구     | 2인 가구     | 3인 가구     | 4인 가구      | 5인 가구     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순위 | 100% | 3,813,363 | 5,866,270 | 8,168,429 | 8,802,202  | 9,326,985  |
| 2순위 | 110% | 4,194,699 | 6,452,897 | 8,985,272 | 9,682,422  | 10,259,684 |
| 3순위 | 120% | 4,576,036 | 7,039,524 | 9,802,115 | 10,562,642 | 11,192,382 |

※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(579,278원)을 합산하여 산정

※ 1인당 평균금액=(5인가구 월평균소득-3인가구 월평균소득) / 2

• 지역기준 - 동일 소득일 경우 지역 순위 적용

| 순 위 | 지 역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순위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 거주자 : 주민등록상 주소지<br>대 학 : 소재지 내 대학의 재적증명서<br>직 장 : 소재지 내 직장의 재직증명서 |
| 2순위 | 서울특별시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순위 | 그 외 지역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• 자동차 가액기준 -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, 아래 가액보다 적은 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만 청약가능

| 자동차가액   |
|---------|
| 4,542만원 |

• 자산기준

| 청 년<br>30~39세 가구 기준 적용 | (예비)신혼부부<br>소득 3분위 기준 적용 | 비 고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251                    | 345                      | 단위 : 백만원 |

※ 청년안심주택 청년(본인) 자산 기준은 30~39세 가구 금액을 따름

※ 청년안심주택 (예비)신혼부부 (구성될)세대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 금액을 따름

-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: 최초 모집공고를 따르되, 최신 기준에 따름
- ※ “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”과 “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”의 차이
  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  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)

## [당첨자발표]

■ 단지 홈페이지 (<https://thepodium830.com>), 2026.08.19. (수) 17:00 예정

- 당첨자 :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·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.
- 예비당첨자 :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 당첨자에게 사업 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며,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.

## [별첨]

### ■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(최신)

- 특별공급 제출서류 \*모집공고 이후 발행분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<br>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<br>※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증빙서류 추가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, 정부24(인터넷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<br>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주민등록초본 (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<br>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“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” 추가<br>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월평균 소득(해당 세대원(인원) 전체)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공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전전년도~해당년도)<br>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<br>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및 자산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<br>※ “과세내역 없음” 인 경우도 발급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직접 방문하여 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득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.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.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소득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실증명<br>(신고사실없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<br><br>-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자  | 일반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|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br>(재직증명서 포함)             | 해당 직장,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신규취업자                      |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<br>(재직증명서 포함)               | 해당 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개인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<br>(사업자등록증 포함)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신규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,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<br>(사업자등록증 포함) |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<br>(사업자등록증 포함)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산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.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<br>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[내계좌 한눈에]에서 본인명의 (금융, 주식, 보험 등 전체) 발급 후 작성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(대출 전체) 발급 후 작성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세목별과세<br>증명서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               | 금융결제원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신용정보조회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| 주거래 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.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(사본, 해당자만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재 거주하고 있는<br>주택이 전·월세인 경우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. [자동차 소유자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<br>또는 복지포털,<br>정부24(인터넷) |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
| 47-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.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<br>- 대학 : 재직증명서<br>- 직장 : 재직증명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직증명서 : 대학<br>재직증명서 : 직장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★입주 당일 전입<br>신고를 한 후<br>(입주 후 7일<br>이내 제출)                     |
| (해당자에 한함) 무소득자 확인각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지 홈페이지에서 양식<br>다운로드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해당자에 한함)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지 홈페이지에서 양식<br>다운로드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추가,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(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) : 청약홈 ([www.applyhome.co.kr](http://www.applyhome.co.kr))

※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 자료 :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계약서

※ 소득 자료 기타 예외 사항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[별표6] 참조



- 일반공급 제출서류 \*모집공고 이후 발행분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<br>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<br>※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증빙서류 추가제출<br>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<br>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"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" 추가<br>3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4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<br>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"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" 추가 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<br>5. 공급신청서<br>6. 서약서<br>7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,<br>정부24(인터넷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전전년도~해당년도)<br>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<br>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<br>※ "과세내역 없음" 인 경우도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               | - 직접 방문하여 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
| 9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, 정부24(인터넷)   |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                   |
| 10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★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(입주 후 7일 이내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추가,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(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) : 청약홈 (www.applyhome.co.kr)